

임실군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임실군의회 의장



2022년 3월 16일

임실군의회 조례 제1호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임실군의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2.>

제2조(위원회의 설치) 임실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 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의 선임) 위원회의 위원은 임실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이면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① 위원회의 의결로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전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그 안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 등을 감안하여 인원 또는 기간 등을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복무에 관한 사

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1.12.>

- ④ 자문위원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 ⑤ 자문위원의 수당지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상임위원회

제9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的人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운영행정위원회 6명 이내
- 2. 산업건설위원회 6명 이내

제1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각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 및 부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소관으로 한다.<개정 2019.12.31.> <개정 2021.2.19.>

- 1. 운영행정위원회
 - 가. 의회 운영,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
 - 나. 의회사무과
 - 다. 기획감사실
 - 라. 행정문화국
 - 마. 직속기관
 - 바. 읍면
- 2. 산업건설위원회

가. 복지환경국

나. 산업건설국

제11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임실군의회의 의원은(이하 “의원”이라 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두 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선출된 의원은 선출된 날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의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4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장은 각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장 특별위원회

제15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의회는 상임위원회 소관이 중복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1.12.>

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이면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1.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